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대학 및 공공기관이 특허품질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관리
- 「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」 수립 및 이행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·활용단계에서 수익화를 고려한 지식재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 평가항목을 일부 개선·보완

◇ 주요내용

- 가. 수익화 관점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변경
- 평가항목 변경을 통해 대학·공공연의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효과적으로 이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
 - 기술이전성과 관련 정의 및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등 추가
 - 평가항목 변경에 따른 별표의 선정기준 및 별지 서식 수정

변경 전	변경 후
• 가출원 활용률	• 기술이전 성과
- 가출원 / 신규 국내출원	- 기술이전수입 / 특허수수료비용 - 경상기술료 수입 / 기술이전수입